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사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 수사 또는 내부 조사 중에 있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 예규가 2009. 8. 6.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제도상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한의 요건, 범위 및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예규는 ‘그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직무관련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신설)
- 예외적으로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3.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을 “징계처분”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를 “재직 중의 위법행위” 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
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2.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
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
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u>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비위사실이 <u>직무에 관한 위법행위</u>로서 법관징계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② <u>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u></p>	<p>제1조 (목적) ----- ----- <u>징계처분</u> ----- ----- ----- ----- -----.</p> <p>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① ----- ----- ----- ----- <u>재직 중의 위법행위</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u></p> <p>1. <u>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u></p> <p>2. <u>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u></p> <p><u>③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 소관 부서명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연락처	(02) 3480 - 1796